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2019 . 03 . 22 .

문서번호	인재경영팀-6170	선임	인재경영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9.03.28.	03/22	03/25	03/25	전결03/28		
공개여부	공개	이혜민	김상현	김상현	최경란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707)호	협 조		선임	경영지원 팀장		
				03/24	03/25	강경남	
				손현정			

추진근거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통보 (공기업담당관-1238, '19.01.28.) -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 (노동정책담당관-10417, '18.10.07) - 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안) (2016.09.13.)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협의 완료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기 타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시)	무 <input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형 생활임금 및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재단의 기본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한편, 신규임용자의 경력환산기준과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서울디자인재단 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 『2019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통보(공기업담당관-1238, '19.01.28.)』 및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노동정책담당관-10417, '18.10.07.)』을 반영하여 기본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하고자 함.
- 신규 임용시(실무자급)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직급별 최대 경력 인정범위를 규정으로 명시하여 신규임용자의 경력환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안)』(2016.09.13.)의 “위험업무, 야간업무 등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해당 수당 신설 지급요구”에 따라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개정 2017.01.02.)』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13조(특수업무수당)(개정 2017.03.16.)』을 신설하였으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상이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및 ‘19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및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 개정
 - 기준1 : ‘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 1.8%이내(호봉승급분 1.4%별도)
 - 기준2 : ‘19년 서울형 생활임금 : 월급 2,120,932(연봉 25,451,184)
- 보수규정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와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

5> 경력환산기준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수규정 제11조(신분변동시 연봉계산) 1호 또한 보수규정 시행내규 및 인사규정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내용을 변경함.

- 신규 임용시(실무자급) 직급별 최대경력인정 범위를 명시

직급	일반직 자격기준
1급	○해당분야에 15년이상 경력자
2급	○해당분야에 12년이상 경력자
3급	○해당분야에 9년이상 경력자
4급	○해당분야에 5년이상 경력자
5급	○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자
6급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타기관 신규직원 자격기준 및 보수산정 비교표

구분	산업진흥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신입직원 직급	7급	7급	7급	6급
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근거: 인사규정 정규직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음 *근거: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근거: 인사규정 제7조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근거: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보수	직급 하한액 *근거: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연봉 책정 시 관련 경력 2년까지 인정 *근거: 채용공고문 (18.10.16.)	3년까지 경력 인정 *근거: 채용공고문 (18.11.20.)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 대표이사가 정함 *근거: 보수규정 제11조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의 특수업무 수당 지급대상 일치

구분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제13조(특수업무수당) ①항
내용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이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보수규정 <별표 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재단 직원에 한해 지급한다.

- 법정 안전관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보수규정에도 명시

위를 6급(2년), 5급(4년), 4급(8년), 3급(11년)으로 명시하고자 함.

※ 타기관 특수업무수당 비교표

구분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수당 명칭	특수업무수당	특정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	안전관리수당
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
내용	회계직, 예산담당, 전산직, 계약담당, 시설담당 ,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 무대기술자(특수종사자(기계, 조명, 음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계, 예산, 전산, 계약담당, 시설담당 ,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특정업무수당: 노무, 계약, 결산, 예산, 경영평가, 감사, 법정선임수당: 시설안전(산업), 전기안전, 전기안전보조, 소방안전, 안전관리(공연)	해당 법률상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해당 관공서에 신고된 자 (예)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전력기술인 단체에 선임 신고된 자

-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분야에 “법정 안전관리자”를, 적용범위에는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직원”을 추가하여 보수규정 시행내규와의 통일성을 기함.

3. 개정내용

-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및 <별표6>경력환산기준표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 개정
 - 전문직 마급 : 하한액 11.24% 조정(생활임금 준수)
 - 전문직 다급·라급 / 일반직 5급·6급 : 차하위 직급간 기존 연봉 구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
 - 그 외 : 총인건비 인상률 1.8%로 상·하한액 일괄 인상
- 보수규정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를 “연봉산정표”로 변경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5>경력환산기준표와 혼란 방지)
- 보수규정 제11조(신분변동시 연봉계산) 1호를 “<별표6> 연봉산정표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5> 경력환산기준표”로 변경
- 신규 임용시(실무자급) 직급별 최대경력인정 범위를 명시
 - (현행) : 보수규정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1호 “신규임용시 연봉결정은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에 의거하여 방침으로 운영(직급별 최대경력인정범위 : 6급(2년), 5급(4년), 4급(8년), 3급(11년))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일반직 6급의 자격기준이 “해당분야에 3년 미만 경력자”에서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으로 개정(2018.12.21.)
 - 이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신규임용시 직급별 최대 경력 인정범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경력환산 적용 시 인정 경력이 직급별 채용경력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직급별 채용경력기준을 최저 경력기준으로 적용한다.</p>			<p>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별표6> 연봉산정표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별표5>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경력환산 적용 시 인정 경력이 직급별 채용경력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직급별 채용경력기준을 최저 경력기준으로 적용한다.</p>																																																																																				
<p><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급</th> <th>상한액</th> <th>하한액</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이사</td> <td colspan="2">시장이 결정</td> </tr> <tr> <td rowspan="6">일반직</td> <td>1 급</td> <td>77,178</td> <td>57,842</td> </tr> <tr> <td>2 급</td> <td>71,034</td> <td>44,876</td> </tr> <tr> <td>3 급</td> <td>64,123</td> <td>38,852</td> </tr> <tr> <td>4 급</td> <td>57,120</td> <td>31,192</td> </tr> <tr> <td>5 급</td> <td>49,143</td> <td>24,432</td> </tr> <tr> <td>6 급</td> <td>44,972</td> <td>21,459</td> </tr> <tr> <td rowspan="5">전문직</td> <td>가 급</td> <td>61,790</td> <td>29,941</td> </tr> <tr> <td>나 급</td> <td>54,461</td> <td>26,650</td> </tr> <tr> <td>다 급</td> <td>47,753</td> <td>23,067</td> </tr> <tr> <td>라 급</td> <td>42,018</td> <td>20,980</td> </tr> <tr> <td>마 급</td> <td>36,110</td> <td>20,406</td> </tr> </tbody> </table>			직급	상한액	하한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 급	77,178	57,842	2 급	71,034	44,876	3 급	64,123	38,852	4 급	57,120	31,192	5 급	49,143	24,432	6 급	44,972	21,459	전문직	가 급	61,790	29,941	나 급	54,461	26,650	다 급	47,753	23,067	라 급	42,018	20,980	마 급	36,110	20,406	<p><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급</th> <th>상한액</th> <th>하한액</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이사</td> <td colspan="2">시장이 결정</td> </tr> <tr> <td rowspan="6">일반직</td> <td>1 급</td> <td>78,567</td> <td>58,883</td> </tr> <tr> <td>2 급</td> <td>72,313</td> <td>45,684</td> </tr> <tr> <td>3 급</td> <td>65,277</td> <td>39,551</td> </tr> <tr> <td>4 급</td> <td>58,148</td> <td>31,753</td> </tr> <tr> <td>5 급</td> <td>50,028</td> <td>26,237</td> </tr> <tr> <td>6 급</td> <td>45,781</td> <td>23,863</td> </tr> <tr> <td rowspan="5">전문직</td> <td>가 급</td> <td>62,902</td> <td>30,480</td> </tr> <tr> <td>나 급</td> <td>55,441</td> <td>27,130</td> </tr> <tr> <td>다 급</td> <td>48,613</td> <td>25,651</td> </tr> <tr> <td>라 급</td> <td>42,774</td> <td>23,330</td> </tr> <tr> <td>마 급</td> <td>36,760</td> <td>22,692</td> </tr> </tbody> </table>			직급	상한액	하한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 급	78,567	58,883	2 급	72,313	45,684	3 급	65,277	39,551	4 급	58,148	31,753	5 급	50,028	26,237	6 급	45,781	23,863	전문직	가 급	62,902	30,480	나 급	55,441	27,130	다 급	48,613	25,651	라 급	42,774	23,330	마 급	36,760	22,692
직급	상한액	하한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 급	77,178	57,842																																																																																				
	2 급	71,034	44,876																																																																																				
	3 급	64,123	38,852																																																																																				
	4 급	57,120	31,192																																																																																				
	5 급	49,143	24,432																																																																																				
	6 급	44,972	21,459																																																																																				
전문직	가 급	61,790	29,941																																																																																				
	나 급	54,461	26,650																																																																																				
	다 급	47,753	23,067																																																																																				
	라 급	42,018	20,980																																																																																				
	마 급	36,110	20,406																																																																																				
직급	상한액	하한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 급	78,567	58,883																																																																																				
	2 급	72,313	45,684																																																																																				
	3 급	65,277	39,551																																																																																				
	4 급	58,148	31,753																																																																																				
	5 급	50,028	26,237																																																																																				
	6 급	45,781	23,863																																																																																				
전문직	가 급	62,902	30,480																																																																																				
	나 급	55,441	27,130																																																																																				
	다 급	48,613	25,651																																																																																				
	라 급	42,774	23,330																																																																																				
	마 급	36,760	22,692																																																																																				
<p><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p> <p>(중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률 또는 지급액</th> <th>적용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개정 2017.01.02></td> <td>◦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 월 80,000원 (기술수당 후락)</td> <td>◦ 회계·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술수당 후락)</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용 범위	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개정 2017.01.02>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 월 80,000원 (기술수당 후락)	◦ 회계·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술수당 후락)	<p><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p> <p>(중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률 또는 지급액</th> <th>적용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개정 2017.01.02></td> <td>◦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법정 안전관리자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 월 80,000원 (기술수당 후락)</td> <td>◦ 회계·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술수당 후락)</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용 범위	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개정 2017.01.02>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법정 안전관리자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 월 80,000원 (기술수당 후락)	◦ 회계·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술수당 후락)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용 범위																																																																																					
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개정 2017.01.02>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 월 80,000원 (기술수당 후락)	◦ 회계·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술수당 후락)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용 범위																																																																																					
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개정 2017.01.02>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법정 안전관리자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 월 80,000원 (기술수당 후락)	◦ 회계·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술수당 후락)																																																																																					

현 행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

(단위 : 천원)

경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	-	-	-	-	-	21,459	29,941	26,650	23,067	20,980	20,406
2	-	-	-	-	24,432	22,270	31,039	27,610	23,919	21,706	20,948
3	-	-	-	-	25,314	23,081	32,137	28,569	24,771	22,432	21,490
4	-	-	-	31,192	26,197	23,892	33,234	29,527	25,623	23,158	22,032
5	-	-	-	32,190	27,080	24,703	34,334	30,487	26,475	23,884	22,574
6	-	-	-	33,187	27,963	25,514	35,432	31,445	27,327	24,610	23,116
7	-	-	-	34,184	28,845	26,325	36,530	32,404	28,179	25,336	23,658
8	-	-	38,852	35,182	29,727	27,136	37,628	33,363	29,031	26,062	24,200
9	-	44,876	40,000	36,179	30,611	27,947	38,726	34,323	29,883	26,788	24,742
10	-	46,081	41,149	37,176	31,493	28,758	39,825	35,282	30,735	27,514	25,284
11	57,842	47,284	42,298	38,173	32,375	29,569	40,923	36,240	31,587	28,240	25,826
12	59,223	48,489	43,446	39,171	33,258	30,380	42,021	37,200	32,439	28,966	26,368
13	60,604	49,693	44,595	40,168	34,140	31,191	43,119	38,159	33,291	29,692	26,910
14	61,986	50,898	45,744	41,165	35,023	32,002	44,218	39,117	34,143	30,418	27,452
15	63,367	52,101	46,893	42,162	35,905	32,813	45,316	40,077	34,995	31,144	27,994
16	64,748	53,307	48,040	43,160	36,788	33,624	46,414	41,036	35,847	31,870	28,536
17	66,129	54,511	49,190	44,156	37,671	34,435	47,512	41,994	36,699	32,596	29,078
18	67,510	55,715	50,339	45,153	38,553	35,246	48,610	42,953	37,551	33,322	29,620
19	68,892	56,919	51,488	46,151	39,435	36,057	49,709	43,912	38,403	34,048	30,162
20	70,272	58,124	52,636	47,148	40,318	36,868	50,806	44,871	39,255	34,774	30,704
21	71,654	59,327	53,785	48,145	41,200	37,679	51,905	45,830	40,107	35,500	31,246
22	73,034	60,532	54,934	49,142	42,082	38,490	53,003	46,789	40,959	36,226	31,788
23	74,416	61,736	56,082	50,141	42,966	39,301	54,102	47,749	41,811	36,952	32,330
24	75,796	62,940	57,230	51,137	43,848	40,112	55,199	48,707	42,663	37,678	32,872
25	77,178	64,144	58,379	52,134	44,731	40,923	56,299	49,667	43,515	38,404	33,414
26		65,350	59,529	53,131	45,613	41,734	57,396	50,626	44,367	39,130	33,956
27		66,555	60,678	54,129	46,495	42,545	58,494	51,584	45,219	39,856	34,498
28		67,758	61,826	55,126	47,379	43,356	59,592	52,544	46,071	40,582	35,040
29		68,963	62,975	56,123	48,261	44,167	60,690	53,502	46,923	41,308	35,582
30		71,034	64,123	57,120	49,143	44,972	61,790	54,461	47,753	42,018	36,110

개 정 안

<별표6> 연봉산정표 <개정 2019.03.00>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

(단위 : 천원)

경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	-	-	-	-	-	23,863	30,480	27,130	25,651	23,330	22,692
2	-	-	-	-	26,237	24,619	31,598	28,106	26,443	24,000	23,177
3	-	-	-	-	27,087	25,375	32,716	29,082	27,235	24,671	23,662
4	-	-	-	31,753	27,936	26,130	33,834	30,059	28,026	25,341	24,147
5	-	-	-	32,768	28,786	26,886	34,952	31,035	28,818	26,012	24,632
6	-	-	-	33,783	29,636	27,642	36,070	32,011	29,610	26,682	25,118
7	-	-	-	34,799	30,485	28,398	37,188	32,987	30,402	27,353	25,603
8	-	-	39,551	35,814	31,335	29,154	38,306	33,964	31,194	28,023	26,088
9	-	45,684	40,720	36,829	32,185	29,909	39,424	34,940	31,985	28,694	26,573
10	-	46,952	41,890	37,844	33,034	30,665	40,542	35,916	32,777	29,364	27,058
11	58,883	48,220	43,059	38,859	33,884	31,421	41,660	36,892	33,569	30,035	27,543
12	60,289	49,488	44,228	39,875	34,734	32,177	42,778	37,869	34,361	30,705	28,028
13	61,695	50,756	45,398	40,890	35,583	32,933	43,896	38,845	35,153	31,376	28,513
14	63,101	52,024	46,567	41,905	36,433	33,688	45,014	39,821	35,944	32,046	28,998
15	64,507	53,292	47,737	42,920	37,283	34,444	46,132	40,797	36,736	32,717	29,483
16	65,913	54,560	48,906	43,935	38,133	35,200	47,250	41,774	37,528	33,387	29,969
17	67,319	55,828	50,075	44,951	38,982	35,956	48,368	42,750	38,320	34,058	30,454
18	68,725	57,096	51,245	45,966	39,832	36,711	49,486	43,726	39,111	34,728	30,939
19	70,131	58,364	52,414	46,981	40,682	37,467	50,604	44,702	39,903	35,399	31,424
20	71,537	59,633	53,583	47,996	41,531	38,223	51,722	45,679	40,695	36,069	31,909
21	72,943	60,901	54,753	49,011	42,381	38,979	52,840	46,655	41,487	36,740	32,394
22	74,349	62,169	55,922	50,026	43,231	39,735	53,958	47,631	42,279	37,410	32,879
23	75,755	63,437	57,091	51,042	44,080	40,490	55,076	48,607	43,070	38,081	33,364
24	77,161	64,705	58,261	52,057	44,930	41,246	56,194	49,584	43,862	38,751	33,849
25	78,567	65,973	59,430	53,072	45,780	42,002	57,312	50,560	44,654	39,422	34,334
26		67,241	60,600	54,087	46,629	42,758	58,430	51,536	45,446	40,092	34,820
27		68,509	61,769	55,102	47,479	43,514	59,548	52,512	46,238	40,763	35,305
28		69,777	62,938	56,118	48,329	44,269	60,666	53,489	47,029	41,433	35,790
29		71,045	64,108	57,133	49,178	45,025	61,784	54,465	47,821	42,104	36,275
30		72,313	65,277	58,148	50,028	45,781	62,902	55,441	48,613	42,774	36,760

※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신규임용 시 직급별 최대경력인정범위 : 6급(2년), 5급(4년), 4급(8년), 3급(11년)

부 칙 <2019.03.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및 <별표6>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